



제428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노쇼’ 사기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
■ 윤건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079호)

2025.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건영의원 등 16인
2. 제 안 일 : 2025. 6. 25.
3. 회 부 일 : 2025. 6.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긴급 정지하는 등의 피해자 보호책을 담고 있음.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민주당 등 정당의 선거대책위원회 직함을 담은 명함과 위조한 사문서를 제시하며 요식업·숙박업·옥외광고업 등의 업자에게 허위 예·계약(노쇼)을 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적발됨. 심지어 업자에게 특정 업체의 물품을 선결제해주면 계약금 전체를 현금으로 사후에 일괄 결제하겠다는 방식으로 실제 금전 갈취에 이른 사건이 발생함.

정당 등 공적 기관의 관계자를 사칭하는 경우, 업자에게 무비판적 신뢰를 줄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 또한, 해당 범죄는 캄보디아·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거점을 두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

지르고 있어 신속한 검거도 어려운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정당, 국가기관 등 공적 기관의 관계자를 사칭하는 경우는 배제되어 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

이에 정당·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해 타인을 기망·공갈한 행위도 전기금융통신사기에 포함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2조).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정당·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한 경우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라 하더라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단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2. ----- ----- ----- ----- ----- ----- -----정당·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직원 <u>등을 사칭한 경우와 대출의</u> ----- ----- -----.
가. ~ 라. (생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2의2. ~ 7. (생략)	2의2. ~ 7. (현행과 같음)

□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함)」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 등을 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발생한 경우, ①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하여 피해를 방지하고 ② 채권소멸 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신속히 피해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피해자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사기범 계좌)로 자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먼저 피해자의 지급정지요청·피해구제신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즉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자금의 송금·이체·출금 중단)를 하여 피해를 방지함.

○ 이후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 소멸절차 개시공고를 요청하면, 금융감독원이 개시를 공고하고 2개월간 이의제기가 없으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이 소멸되어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환급하게 됨.

[그림 1]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



(자료: 경찰청)

[표 1]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

절차	내용	근거조항
①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요청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자금을 이체한 계좌(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입출금·이체 금지)요청 및 피해구제 신청	§3①
② 지급정지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입출금·이체 금지) 실시 ※ 수사기관·금융감독원의 정보제공 또는 금융회사의 자체점검 등을 근거로 지급정지도 가능	§4①
③ 지급정지 통보	금융회사가 금감원, 명의인, 피해자 등에게 지급정지 사실을 통보	§4②
④ 채권소멸절차 개시 요청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을 소멸하기 위한 절차 개시 공고 요청	§5①
⑤ 전자금융거래 제한	금감원이 ③에 따라 통보받은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	§13의2
⑥ 채권소멸절차	④의 요청에 따라, 금감원이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공고	§5②
	(이의제기 등 없을시) 2개월 후 예금채권 소멸	§9①
⑦ 피해금 환급	채권소멸 후 금감원이 14일 내 피해환급금을 산정하여 피해금 환급 결정 → 금융회사를 통해 피해금 환급	§10①
⑧ 전자금융거래 제한 종료	피해금 환급 지급이 종료된 경우 전자금융거래 제한 종료	§8

(자료: 관계부처합동,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2020. 6., 18쪽 재구성)

- 또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병과가능), 그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하며, 상습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범한 자는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2호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고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하도록 규정함.

○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한 것이 이 법이 처음 제정된 2011년 당시 반영된 것으로¹⁾, 대법원 역시 이러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한 것은 보이스피싱이 아닌 온라인상에서의 재화나 용역에 관한 일반적인 거래를 이 법의 규율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²⁾.

□ 그런데 최근 정당, 정부나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여 요식업자·숙박업자 등에 허위 예약·계약을 한 후 계약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후 현금 이체를 약속하고 특정 업체의 물품 구매를 선결제해줄 것을 요

1) 정무위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위를 일반적인 물품판매 사기 등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급정지 등이 지나치게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함(2010. 9. 10. 정무위 법안소위)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김주현** 기타 절차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전화금융사기의 개념 관련입니다.
의원님들 안은 전화, 인터넷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해 사람을 속여 자금을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한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TF안은 이 법이 적용되는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위를 전화, 휴대폰 문자메시지, 인터넷 메시지를 이용한 경우로 한정하고 일반적인 물품판매 사기 등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급정지 등이 지나치게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임영호 위원** 맞는 것 같아요.
○**소위원장 이사철** 박 위원님, 이것은 취지하고 맞는 것입니까?
○**박선숙 위원** 예, 맞습니다.

2)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청한 후 잠적하는³⁾ 사례(이른바 “노쇼”)가 다수 발생하였음⁴⁾.

○ 이는 대규모 예약 부도로 인해 피해업체의 업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기회비용을 포함하여 상당한 규모의 재산상 손실을 발생시키는 사기행위이나,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는 해당하지 않아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가 적용되지는 않음.

○ 이에 개정안은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하여 예약을 부도내는 이른바 “노쇼”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이는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보다 신속히 구제해주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개정안의 취지는 소위 ‘노쇼’로 인해 자영업자 등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여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개정안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취지를 전부 반영하기 어려움.

-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로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것’을 요하는데, 가해자가 재화 공급 등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노쇼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3) 대선캠프의 명의를 사칭하여 모 후보가 묵을 예정이라며 숙박업체에 수십개의 방 예약과 함께 수백만원어치의 도시락을 선결제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후 잠적하는 사례

4) 조선비즈, ““후보님 가십니다” 경찰, 정당 사칭 ‘노쇼 사기’ 50건 수사 중”(2025. 5. 26.)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5/05/26/BATP3Y6CWVGVXLQHD4PUNDFLV4/)

적으로 취하는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송금·이체된 자금에 대한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도모하는 것인데, 피해자로부터 송금·이체된 자금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지급정지 등도 이루어질 수 없음.
- 또한 현행법 제2조제2호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⁵⁾를 말한다고 하면서 각 목에서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정하고 있음.
- 그런데 대부분의 노쇼 사기 사례에서 피해 자영업자 등은 대가를 지불받지 못한 채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려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것이지, 별도로 자금을 송금·이체하거나 출금함으로써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닌바,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는 안 제2조제2호 단서 외에 각 목 부분도 개정하여야 함.

5)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 둘째,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조치⁶⁾, 자체점검을 통한 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⁷⁾, 사기 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조치⁸⁾ 등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금융기관 입장에서 송금이나 이체 행위 외의 원인행위(재화의 공급 및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한 사기 여부를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 금융위원회는 통상적인 보이스피싱의 경우 단시간 내 고액인출이 이루어지는 등 긴급 대응이 요구되고, 일방의 편취행위임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비교적 명확한 반면, 상거래 분쟁은 양 당사자 간 입장 차이가 첨예하여 금융회사 측의 즉각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입장임.

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4(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 ①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인 이용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등의 사유로 본인확인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2. 해당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가입한 저축성 예금·적금·부금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을 해지하는 경우

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① 금융회사는 자체점검을 통하여 이용자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라 한다)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이용자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 또는 송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2.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3. 제2조의5제2항에 따른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마지막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상거래 관련 사기행위 일부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데, 금융위원회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시 지급정지 등 신속하고 강력한 피해구제 수단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전기통신개입이 없는 일반 대면사기 등 여타 사기범죄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08